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의2).

II. 검토의견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관련 부처 이견

- 안 제19조의2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¹⁾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규정은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²⁾는 그 적용에 있어 진정소급효를 인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3년의 구제기간을 두고 있어,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³⁾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주관적 기산점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손해배상사건과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부칙 제2조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안 제19조의2의 내용에 맞춰 조문 제목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최 기 도)

3)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외적 위헌성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국민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 등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을 저해하여 오랫동안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시점(민법 제766조 제2항) 내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민법 제166조 제1항)으로부터 기산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위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 및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